

배포 일시	2022. 6. 23.(목)		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실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종기 (044-201-4567)
		담당자	사무관 이미래 (044-201-4479)
보도일시	2022년 6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매입·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.

- 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천호 모집, 전세임대는 7월 3천호 모집 예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·도에서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‘22년 2차 입주자 모집*을 시작하고,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·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(2순위)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

*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·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·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(3월, 6월, 9월, 12월)

○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,297호, 신혼부부 1,861호로 총 4,158호 규모이며,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·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.

< '22년 2차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(단위 : 호) >

구분	서울	인천	경기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공급 호수	1,308	766	653	453	79	19	79	23	139	127	14	143	32	54	265	4

○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(18일 예정)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, 소득·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.

-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·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(에어컨·냉장고·세탁기 등)으로 공급하며, 시세의 40~5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.

*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(19~39세)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(붙임2)

-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~40%로 거주할 수 있는 I 유형(1,027호)과 ②아파트·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~80%로 거주할 수 있는 II 유형(834호)으로 공급된다.
-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(신혼II)도 신청할 수 있다.

	청년	신혼부부 I	신혼부부 II
소득기준 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)	100% 이하 (2순위 본인+부모 3순위 본인)	70% 이하 (부부합산 90%)	1~3순위 100% 이하(부부합산 120%) 4순위 120% 이하(부부합산 140%)
주택유형	오피스텔 등	다가구주택 등	다가구주택+아파트·오피스텔
임대료	시세 40%~50%	시세 30%~40%	시세 60%~80%
거주기간	최대 6년	최대 20년	최대 6년 (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)

-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청년으로,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, 광역시 9천 5백만원,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,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~200만원이며,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(1~2%)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.
-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.
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(1,137호)·신혼부부(1,361호) 매입 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(<https://apply.lh.or.kr>) 과 마이홈 콜센터(1600-1004)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- 서울주택도시공사, 인천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(1,660호)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(붙임 1 참조)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(7월 18일)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(<https://apply.lh.or.kr>)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(☎1600-1004)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“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매입·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” 라고 밝혔다.



참고 1

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, 전세임대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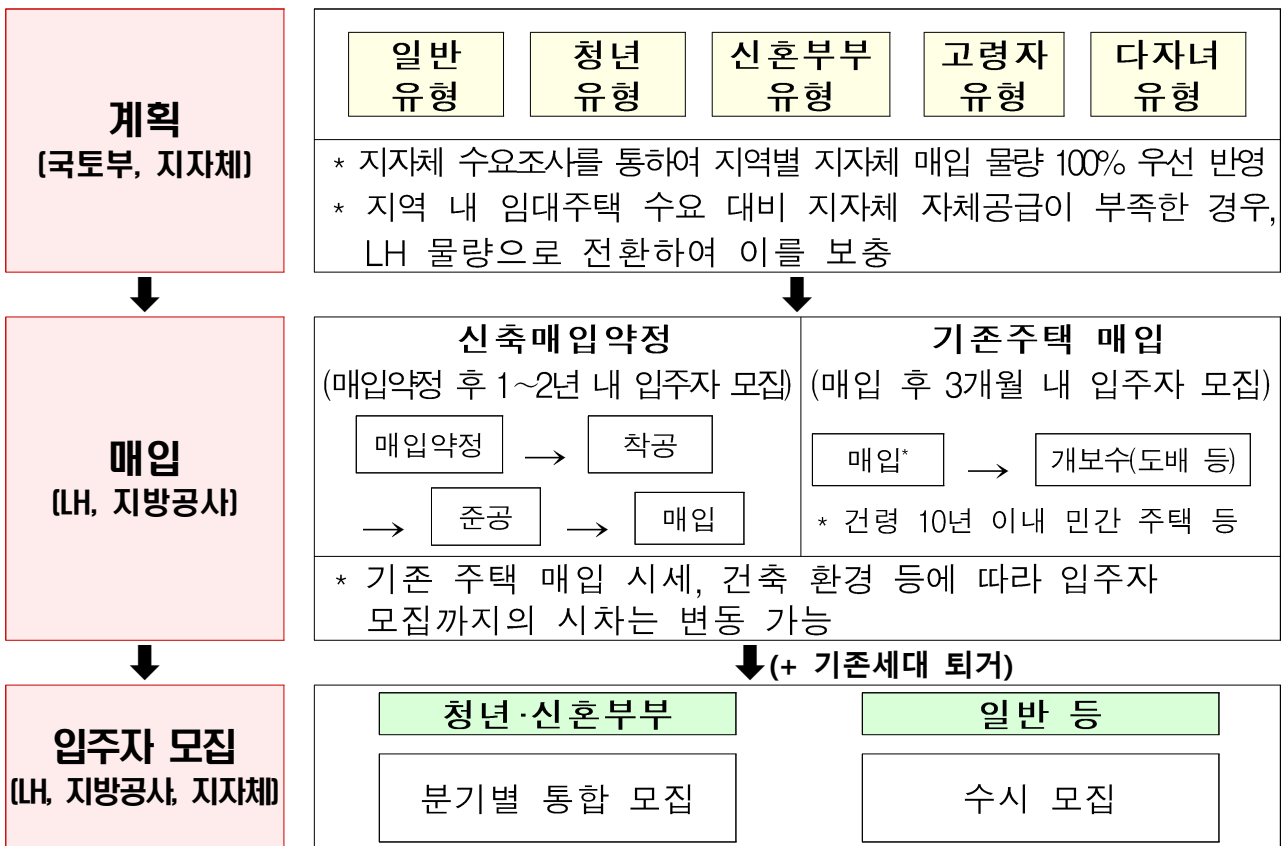
□ `22년 입주자 모집 물량(잠정)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합계
청년·신혼부부** (수도권)	6,444 (4,157)	4,158 (2,727)	5,600 (3,300)	3,280 (1,650)	19,482 (11,834)

*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,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,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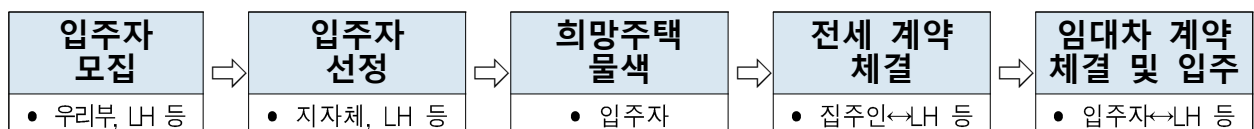
** 청년·신혼부부 외 일반,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

□ 매입임대 사업 절차 : 국토부·지자체·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



□ 전세임대 사업개요 및 절차

- 입주자가 ①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,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②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③입주자에게 재임대(전대)하는 사업



참고 2

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2,498호)

사업자	사업 유형	공급지역 (시·군·구)	공급호수	모집공고	신청접수	결과발표	입주일정
한국 토지 주택 공사	청년 매입임대	79	1,137	6.24	7월 초 ~ 7월 중순	8월 중순	8월 말 ~
	신혼부부 매입임대 I	78	1,027	6.24	7월 초 ~ 7월 중순	8월 말 ~ 9월 초	9월 초 ~
	신혼부부 매입임대 II	60	334	6.24	7월 초 ~ 7월 중순	8월 말 ~ 9월 초	9월 초 ~
	공고문 게재 :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						

*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서울주택도시공사(1,000호)

사업자	사업 유형	공급지역 (시·군·구)	공급호수	모집공고	신청접수	결과발표	입주일정
서울 주택 도시 공사	청년 매입임대	15	1,000	6.29(예정)	7월 중순	12월 말	'23.1월 ~
	공고문 게재 :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(https://www.i-sh.co.kr)						

□ 인천도시공사(500호)

사업자	사업 유형	공급지역 (시·군·구)	공급호수	모집공고	신청접수	결과발표	입주일정
인천 도시 공사	신혼부부 매입임대 II	4	500	2.22~ (상시모집 중)	상시모집	개별안내	개별안내
	공고문 게재 : 인천도시공사 누리집(https://www.ih.co.kr)						

□ 부산도시공사(160호)

사업자	사업 유형	공급지역 (시·군·구)	공급호수	모집공고	신청접수	결과발표	입주일정
부산 도시 공사	청년 매입임대	1	160	7.29(예정)	8.4(예정)	10.12(예정)	10월말~
	공고문 게재 : 부산도시공사 누리집(https://www.bmc.busan.kr)						

참고 3

청년·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

공급 유형		신청 자격	입주 순위		자산기준 (단위 : 만원)	
					총자산	자동차
매입 임대	청년	- 무주택자인 미혼청년* * 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	1 순위	생계·주거·의료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 계층 가구	-	-
			2 순위	- 본인+부모 소득 100%이하 -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	32,500	3,557
			3 순위	- 본인 소득 100%이하 -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 충족	28,800	3,557
	신혼 부부 I	-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* - 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 -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* 혼인 7년 이내,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	1 순위	- 유자녀 (예비)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	32,500	3,557
			2 순위	무자녀 (예비)신혼부부		
			3 순위	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		
	신혼 부부 II	-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* - 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 - 행복주택(신혼부부) 자산기준 충족 * 혼인 7년 이내,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	1 순위	- 유자녀 (예비)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	32,500	3,557
			2 순위	무자녀 (예비)신혼부부		
			3 순위	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		
		-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- 소득 120%(맞벌이 140%) 이하 -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	4 순위	모든 혼인가구	34,100	-
전세 임대	청년	- 무주택자인 미혼청년* * 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	2 순위	- 본인+부모 소득 100%이하 -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	32,500	3,557
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(100%)소득(단위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2022년	3,854,536	5,328,807	6,418,566	7,200,809	7,326,072

* 1인가구는 20%p, 2인가구는 10%p 가산 적용한 금액